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단 비상임이사 중 ‘사업주대표’ 및 ‘근로자대표’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변경〉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48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공단 비상임이사 중 ‘사업주대표’ 및 ‘근로자대표’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변경	3

I. 제안경위

2025년 1월 15일 이수진위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등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등이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Ⅲ. 검토의견

1. 공단 비상임이사 중 ‘사업주대표’ 및 ‘근로자대표’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변경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사업주대표’ 및 ‘근로자대표’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된 현행법을 각각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임원) ① ~ ③ (생략)	제7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	④ ----- ----- ----- ----- ----- -----

장관이 임명한다. <u>1. 사업주대표</u> <u>2. 근로자대표</u> 3. (생략) ⑤·⑥ (생략)	-----. <u>1.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u> <u>2.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u> 3.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한국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비상임이사를 ①사업주대표, ②근로자대표, ③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법 규정 중 사업주대표와 근로자대표를 각각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1) 제7조(임원) ① 공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상임이사 3명
3. 비상임이사 11명 이내
4. 감사 1명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1. 사업주대표
2. 근로자대표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임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노측과 사측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공단의 이사가 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공단의 운영이나 예결산 관련 사항 등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²⁾ 영향을 미치는 노측과 사측 의견의 대표성과 균형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생각됨.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추천권한이 ‘총연합단체’에 한정되는바, 총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맹 노동조합 조합원이 전체 노동조합원의 17.5%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 추천권한을 법률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등 노측과 사측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경로를 좁히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이사회 설치와 기능) ①공기업·준정부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6. 생산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격
7. 잉여금의 처분
8.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
9.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그 사업 수행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10. 정관의 변경
11. 내규의 제정과 변경
12. 임원의 보수
1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4.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23년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 비교 >

구 분	인원수	비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160,162명	4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086,618명	39.7%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7,821명	0.3%
전국노동조합총연맹	1,441명	0.1%
국민통합노동조합총연맹	1,068명	0.0%
대한민국노동조합총연맹	511명	0.0%
미가맹	479,758명	17.5%
합 계	2,737,379명	100%

자료 : 고용노동부, 『2023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2024.12.

현행법이 개정안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으로도 달성이 가능하여 이미 현행법으로 임명된 사업주대표와 근로자대표 비상임이사의 소속이 다음과 같이 각각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10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용자대표 비상임이사]

소 속	직 위	성 명	기 간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	09. 8.14 ~ 16. 1.17
	총괄전무	○○○	16. 2.15 ~ 25. 4.17

[최근 10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대표 비상임이사]

소 속	직 위	성 명	기 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장	○○○	05. 11.22 ~ 18. 5.16
	사무처장	○○○	18. 5.17 ~ 20. 5.21
		○○○	20. 5.28 ~ 23. 4.17
		○○○	23. 4.18 ~ 25. 4.17

고용노동부는 산업·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른 위험 요인이 복잡화되고 있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다양한 근로자·사용자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 전문성·대표성·공정성을 제고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추천 자격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로 제한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을 다양하게 한다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5